구급용구는 어떤 기준으로 비치해야 할까요?

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.

글 편집실

Q **1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식품 제조업체의 보건관리자입니다.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보면 구급용구를 비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. 면적당 개수 혹은 특정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서요. 그 지침이 궁금합니다. 현재 저희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실 한 곳에 구급용구를 구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**

A 구급용구는 통상 '상시 근로자 50명 이상'의 사업장과 신체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노동자 명수에 관계 없이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. 적용 사업장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조에 표시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조항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같은 규칙 제82조는 구급용구로 비치해야 할 용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의사·간호사 외 반출이 금지된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는데요, 응급 시 누구나 꺼내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한편, 질문처럼 면적당 개수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.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재량껏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. 산업안전보건공단의 '현장 응급대응체계 원칙 및 관리지침'은 '건강관리실' 및 '작업현장'에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구급용구의 설치 목적은 응급 시 사업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.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응급처치 교육과 구급용구 관리·점검이겠죠. 산업안전보건공단의 '현장 응급대응체계 원칙 및 관리지침'을 활용해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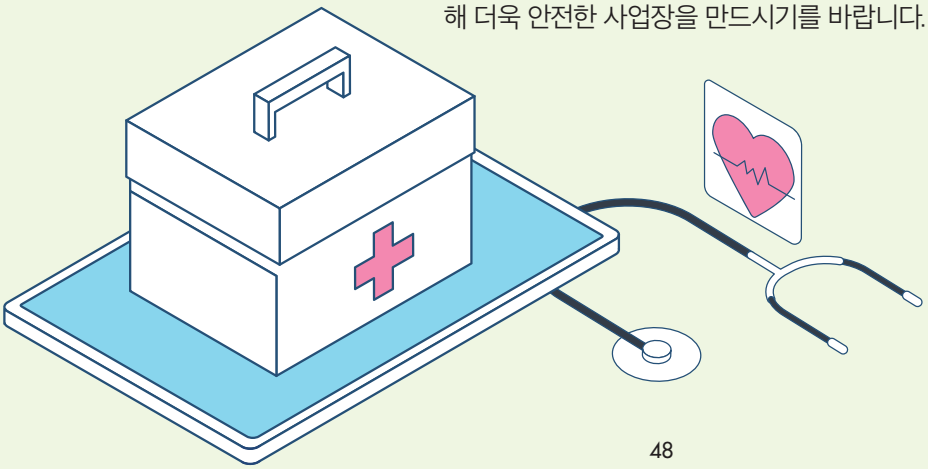

산업안전보건공단
현장 응급대응체계
원칙 및 관리지침

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조, 제16조,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,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,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, 제80조, 제81조, 제83조, 제84조, 제89조, 제93조,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3. 5. 2019. 12. 26.>

제82조(구급용구)

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,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붕대재료·탈지면·핀셋 및 반창고
2. 외상(外傷)용 소독약
3. 지혈대·부목 및 들것
4. 화상약(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)
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40조(긴급 구조훈련)

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, 구조용 장비의 사용,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,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산업보건관리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관련 전문가가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.

54P <독자의 소리>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세요.